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12

2019.12.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이성배 의원 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9.12.17.)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이성배 의원)

1.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만연하므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개정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경영성과 책임 의무 신설(안 제3조제2항)

○ 일반적으로 공적 소유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은 공적 가치를 지니는 서비스를 효율적·생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

- 그러나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출자·출연 기관은 정보의 비대칭과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¹),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²) 등의 이유로 부실·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음.
- 올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각종 비리(예산전용, 인사복무규정 위반)와 재단관리 의무·책임 소홀을 이유로 해임된 사례3)가 있음.
- 이를 방지하고자 대의기구인 지방의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집행기관의 직접 통제, 감사기구의 외부감사, 경영평가, 회계감사 등의 다양한 통제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에 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게 직무의 성실수행 의무, 고의·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경우 해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조).
-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¹⁾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인 활동(로비, 약탈, 방어 등)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

²⁾ 공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적자보전이 만성화됨에 따라 공기업이 수입과 무관한 예산집행을 지속 하여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

³⁾ 서울시는 각종 비리 협의로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해임(2019.2.12)한 바 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해임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942 해임처분취소)'을 제기해 소송 중에 있음.

제7조제4항에서는 시장이 기관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이와 같이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기관장 등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엄중한 수행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기관장의 책무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도 기관장의 경영상의 책임을 추가하여 설치 근거 조례가 각각 개정된 바 있어⁴⁾, 출자·출연 기관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입법 체계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음.
- 다만, 현행 조례 제3조는 조직과 인력의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개정안과 같이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의 제목을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	제3조 <u>(조직·인력 운용)</u> ① (현행과	제3조 <u>(기관장의 책무)</u> ① (개
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같음)	정안과 같음)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출자 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u>② (개정안과 같음)</u>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⁴⁾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올해 3월 2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 시설공단은 올해 9월 26일에 대표의 경영 책임을 각각 근거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조의 제목을 "조직·인력 운용"에서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함 (안 제3조).

Ⅵ.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1112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 안 자 : 기 획 경 제 위 원 장

1. 수정이유

○ 조의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조의 제목을 "조직·인력 운용"에서 "기관장의 책무"로 수정함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목을 "(조직·인력 운용)"에서 "(기관장의 책무)"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제3조 <u>(조직·인력 운용)</u> ① 출자· <i>출</i> 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제3조 <u>(기관장의 책무)</u> ① (개정안과 같음)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② (개정안과 같음)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	
	하여 책임을 진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출자·출연 기관이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3조(기관장의 책무)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
운용하여야 한다.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